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 년 10 월 18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BNK투자증권
(영문명) BNK Securities.co.,Ltd.
(홈페이지) http://www.bnkfn.co.kr

본 점 소 재 지 :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259-4번지 부산은행부전동지점 4층
(전 화) 051-669-8000

대 표 이 사 : 김 병 영

담 당 책 임 자 : (직 책) 부 장
(성 명) 장 대 현 (전 화) 02-2115-5122

작 성 자 : (직 책) 차 장
(성 명) 박 지 은 (전 화) 02-2071-7623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6-2호)

소송 등의 판결.결정

1. 사건의 명칭	부당이득금
2. 원고・신청인	㈜비엔케이투자증권
3. 판결・결정내용	원고 청구 기각
4. 판결・결정사유	전문투자자 간 거래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기각
5. 관할법원	서울남부지방법원
6. 판결・결정일자	2021.10.15.
7. 확인일자	2021.10.18.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

<기재상의 주의>

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의 판결·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
주2) “판결・결정사유”는 소송의 포기・취하・인낙・화해, 판결, 결정, 명령,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.

주3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・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